

【 근거중심의학(EBM) 소위원회 시행세칙 】

[신설 2021년 8월 31일]

① (목적)

1. 이 지침은 교육과정 소위원회 시행세칙에 따라 근거중심의학(EBM) 소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2. 위원회는 고신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육 목표를 성취함에 있어 근거중심의학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는 데 있다.

② (적용범위)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타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시행세칙에 따른다.

③ (설치와 구성)

1. 위원장은 의과대학장이 임명한다.
2. 당연직은 근거중심의학교과목 책임 혹은 부책임 교수로 하며 그 임기는 해당 보직기간으로 한다.
3. 선출직 위원은 의과대학 교원 중에서 의과대학장의 추천으로 의과대학 운영위원회에 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4. 위원회는 위원장을 보조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.

④ 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의과대학교육에서 근거중심의학교육에 관한 다음의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.

1. 근거중심의학교육과정의 전반적인 기획,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의학연구교육과정의 전반적인 기획,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근거중심의학교육과정의 평가 ·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
4. 의학연구교육과정의 평가에 관한 사항
5. 기타 교육과정 업무에 관하여 의과대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

⑤ (회의)

- 회의는 학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집한다.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-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하게 하거나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.

⑥ (간사)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⑦ (기록보관)

-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한다.
-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출석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학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.
- 위원장은 비공개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즉시 운영위원회와 관련 위원회 또는 교수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.

부 칙

- 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2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.